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2호
- 나. 발 의 자 : 김영한의원
- 다. 발의일자 : 2014년 11월 14일
- 라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4일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“경과”을 “지난”으로 하고 “존치”를 “보존”으로 하며 “이차보전”을 “이자 차액의 보전”으로 하고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하며 “2회”을 “두 차례”

으로 함. (안 3조, 제8조, 제10조 제18조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<sup>1)</sup>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<sup>2)</sup>에 따라 노인,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,
  - 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일반시민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음.
- 동 조례 제3조의2중 “경과된”을 “지난”으로 하고 “존치”를 “보존”으로 하며, 제8조제2항제1호중 “이차보전”을 “이자 차액의 보전”으로 수정하는 등 대부분 자구수정을 하고 있는 바,
  - 이는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례상 자구수정이므로 관계법령과 상치되는 점이 없고,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음.

---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 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  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  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향후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·개정에서, 시민이 조례의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, 문법에도 맞지 않아,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한자어 등으로 표현된 경직된 법령 문장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.